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1. 지역사회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 2) 신청자가 기초 이거나 의료급여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 법 40조 제2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동반재가노인복지센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 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방문요양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 3) 표준 요양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4)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5) 급여 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 6)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7)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8)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9)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 1)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4)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 1)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4) 이용자(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의 의무 사항을 숙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 5)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
- 6) 5번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
- 7)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8)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의무

4. 기관의 권리와 의무

- 1)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의무
- 2)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 사유와 함께 안내하는 것에 대한 의무
-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 4)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요양 기술 교육 실시
- 5) 수급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통한 서비스 제공자 업무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 1)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험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④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통지 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동의를 받는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협의를 거쳐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안내하고 변경계약서 및 안내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급여계획 수립의 변동이 있는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5) 월 한도액이 증가되어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6) 자격 변경으로 인한 본인부담률의 변동이 있는 경우